

##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 
번호

87

제출년월일 : 2003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-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가제정(조례 제2676호 2001. 10. 12) 되어 우리도의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추천 농특산물상표사용 승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
- 지역우수 농특산물의 육성을 위하여는 시.군에서 품목별로 공동상표를 제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(농림부 권장사항, 농림업무평가시 적용) 시.군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본 조례를 폐지함.

### 3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 폐지

4. 의안전문 : 따로 불입

5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불입

##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(조례 제2676호, 2001.10.12)는 이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조례 시행당시 도지사가 승인한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권은 상표사용 승인 말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【지방자치법】

제15조(條例)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 할 수 있다. 다만,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.